

【일련번호: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불용품 결정 및 처분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 ○ ○

조 치 부 서 ○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총무담당에서는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동법 제78조와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 불용품의 양도 중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은 지역주민에게 양도 할 수 있으며,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양여 받는 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물품의 사용 경위, 물품의 상태, 무상양여하는 사유, 계약서 및 수령증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조제2항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지정할 수 있으며, 제3조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읍면의 물품관리관은 읍·면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군수는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읍·면장은 단가 30백만원(장부가격)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은 불용결정은 위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8.7)에 의거 불용품의 처분방법에는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불용품 보존 등이 있고, 양여를 결정할 때는 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물품양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인계·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2017년 4월부터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불용결정 및 처분(양여)하여야 할 물품 75건(불용결정 후 미처리 30건, 불용 및 처분 미처리 45건)을 정리하지 않고 ○○○ 물품으로 전산 관리되고 있는 등 불용결정 및 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불용결정 및 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급 B(현 ▼▼)과 ***급 O(현 ◇◇)에게는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운영기준에 따라 확인 조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계약업무 소홀(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소 관 부 서 ○ ○ ○

조 치 부 서 ○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년 vv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주) 대표 P과 2018. 4. 6.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고 2018. 5. 16.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원)

공사명	계약금액 (정산액기준)	지급일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	계약상대자
vv소하천 유지관리사업	42,556,760	2018. 5. 16.	2018. 5. 14.~ 2020. 5. 13.	1,276,700	∞∞ (주)P

※하자보수보증금률 100분의3 적용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30. 시행)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제3호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VV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지급)금액 42,556,760원(정산금액 기준)으로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제외 대상 공사가 아님으로 검사가 완료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사업 하자보수보증금률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5항에 따라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 징구하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하자보수보증금 미 징구로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겸 책임자인 ***급 Y(현 □□)에게는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사업 하자보수보증금률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5항에 따라 납부토록 조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소홀
소 관 부 서 ○ ○ ○
조 치 부 서 ○ ○ ○
내 용

1. 상속안내문 미발송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상속 개시일	주 소	취득세 신고여부	가산세 납 부
1	S	*****	20170830	-	신고	
2	D	*****	20170902	-	신고	
3	F	*****	20171001	-	신고	
4	G	*****	20171117	-	신고	
5	H	*****	20171118	-	신고	
6	J	*****	20171203	-	신고	
7	M	*****	20180127	-	미신고	가산세 대상
8	K	*****	20180204	-	신고	121,270원
9	L	*****	20180304	-	미신고	가산세 대상
10	Q	*****	20180402	-	신고	
11	W	*****	20180522	-	미신고	가산세 대상
12	E	*****	20180612	-	신고	
13	R	*****	20180720	-	신고	307,870원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취득신고를 기한내에 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취득신고 및 등기절차 안내문 시달(재무과-26588(2015.9.23.))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여야하나, 고성군 ○○○ ▶▶2길 ** M(**.**.*)외 12명의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지방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 사항

실무담당자로서 지방세 업무를 소홀히 한 ***급 A(현 ::::)에게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 요구

제 목 ◁◁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합판거푸집 설계 부적정
소 관 부 서 ○ ○ ○
조 치 부 서 ○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리 ◁◁마을 지내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2017. 4.18. (주)■■ 대표 N와 11,835천원에 「◁◁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2017. 4.24. 착공하여 2017. 5.21. 준공하였음.

공사명	위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지구배수로 정비공사	○○○ ▶▶리	○ 수로관(800B): L=260m ○ 콘크리트포장: L=65m, A=195m ²	31,045	11,835	19,210	2017. 4.24. ~ 2017. 5.21.	(주)■■ 대표 N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138조(시공확인)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

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정산대상 경비가 관련 규정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 한 후 당해 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 2017. 4.18. (주) ■ ■ 대표 N와 11,835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 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경우,

설계 작성 및 공사 시공을 함에 있어 콘크리트 포장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판거푸집 설치 수량 $A=19.5\text{m}^2$ ($L=65\text{m}$)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설계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측 $L=65\text{m}$ 는 수로관과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본 공사 도급자도 수로관에 접하여 시공하였으므로 합판거푸집이 불필요하여 수량산출서 작성시 합판거푸집은 19.5m^2 가 아닌 9.75m^2 로 계상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에 대한 세심한 주의 없이 이를 설계서에 19.5m^2 으로 반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설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에서는 해당 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대금 11,712천원을 지급하여 363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정산 없이 지급한 공사비 363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 요구

제 목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정산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 ○ ○
조 치 부 서 ○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공사명	위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지구 송수관로 정비사업	○○○ ◀◀리	○ PE수도관부설 (Φ40~50): L=780m	26,994	13,900	13,094	2018. 2.27. ~ 2018. 3.21.	●●(주)대표 C
○○○ 도로(산지부) 제초작업	○○○ 일원	○ 도로 풀베기 : A=24,000㎡	7,200	7,200	-	2018. 9. 7. ~ 2018. 9.19.	◆◆ 대표 V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제6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비용부담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실

제 비용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따라 발주자 및 공사감독은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기성 또는 준공검사시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 2018. 2.27. ●●(주) 대표 C와 13,9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안길 정비공사」 (이하 “①” 이라고 한다) 및 2018. 9. 7. ◆◆법인 대표 V 과 7,2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 도로(산지부)제초작업」 (이하 “②” 이라고 한다)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내역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①의 경우 36,732원 ②의 경우 18,066원,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를 ①의 경우 71,672원 ②의 경우 35,251원을 계상하였다.

○○○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가 의무경비로 포함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과 환경보전비 집행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세심한 주의 없이 ①에서는 143천원, ②에서는 70천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정산 없이 지급한 ①의 공사비 143천원, ②의 공사비 70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안길 정비공사 준공전 정산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 ○ ○
조 치 부 서 ○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리 △△ 지내 도로 미정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2017. 3.10. (주)▽▽ 대표 X와 11,300천원에 「△△안길 정비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2017. 3.14. 착공하여 2017. 4.10. 준공하였음.

공사명	위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안길정비공사	○○○ ◎◎리	○ 아스콘덧씌우기 L=558m, A=24.97a	28,400	11,300	17,100	2017. 3.14. ~ 2017. 4.10.	(주)▽▽ 대표 X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회계 예규 제2장 제5절 3관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이며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경비로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138조(시공확인)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

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 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정산대상 경비가 관련 규정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 한 후 당해 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 2017. 3.10. (주)▽▽ 대표 X와 11,3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안길 정비공사」 경우,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종과 무관한 도로 토공용 장비 모터그레이더를 중기운반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공종에 2인(1일)의 노무비를 계상하면서 공사 구간내 이동차량과 보행자 통제를 위하여 시·종점에 배치하는 근로자는 목적물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간접노무자가 아니므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노무비가 아닌 경비항목에 계상하여야 하나, 노무비에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등 설계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에서는 설계서에 잘못 적용된 사항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대금 11,258천원을 지급하여 223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실무담당자로서 설계서에 잘못 적용된 사항에 대하여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 ※※※급 Z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정산 없이 지급한 공사비 223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